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준칙 합의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용)

회사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효력)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용어의 정의)

본위원회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으로 하고, 각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에 준한다.

- ① 회사측 위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당연직 3인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노조측 위원 - 위원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③ 간사 -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각각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운영규정의 심의)

본 규정은 위원회 심의 의결로 제·개정 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7조(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회사측 6인, 노조측 6인으로 하여 총 12인으로 구성한다.

1. 회사측 위원

대표위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인

위원 -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 2인

간사 - 안전관리주관 부서장

2. 노조측 위원

대표위원 - 노동조합대표(노동조합 위원장) 1인

위원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자 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노동조합대표가 지명하여 위촉한 위원 2인

간사 - 안전관리담당자

제8조(직무)

본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 ①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1/4분기, 3/4분기는 회사측이, 2/4분기, 4/4분기는 조합측이 맡는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전상정,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제반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9조(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사항
- ⑤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
- ⑧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⑨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⑩ 산업재해 사후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 ⑪ 각종 안전회의체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⑫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 ⑬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⑭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신분 보장)

- ① 회사는 위원이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9조에 정한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
- ② 회사는 노조대표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임시상근 요청시 이를 보장한다.
- 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는 노측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자료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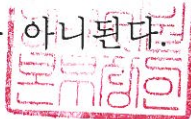
회사는 노조대표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시 거부하지 못한다.

제12조(참고인 출석)

- ① 노·사 양측이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케 한다.
- ② 참고인으로 위원회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즉시 출석하여 성실히 의견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자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참고인의 신분보장)

- ① 회사는 위원의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일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위원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 및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제반 장비 및 비품 등을 요청시 제공하며 기타 이에 따른 관련 유지비를 지원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별도로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 -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 중대재해 발생시

- 재해발생 및 재해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시
 - 위원장 및 위원 1/3이상의 소집 요청시
- ③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회의소집 및 회의성립)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 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선임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노사 대표 위원이 추천한 1인에 한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회의성립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7조(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한다.

제18조(부결시 조치)

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날인한 후 노사 각 1부씩 갖는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교체위원의 직위와 교체사유
 3.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4.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
 5. 기타 토의 사항
-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0조(회의결과 공지)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임무

제21조 (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에 의거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제22조(권한)

본 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 전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대피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준수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재해 발생보고)

-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7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재개발부장은 이를 노동조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③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④ 사고조사에 노동조합이 참여 요청할 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요양신청)

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기인하여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 해당 사안을 1차 검토한 후, 상황보고서, 본인 및 목격자 진술서, 소속장 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인재개발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27조(설치)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구성)

- ① 실무위원회는 조합측 2인, 회사측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사용자측 실무위원 - 안전보건업무담당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 2인
- ③ 근로자측 실무위원 - 노동조합 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2인
- ④ 간사 -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다.
- ⑤ 당해 안전과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필요시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29조(운영)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2일 이내 개최한다.

제30조(기타)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1월 2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본부장 정석찬 *정석찬*

지부장 김필성 *김필성*